****

**제17대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 선거 시행 세칙**

1. 본 세칙은 제17대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며, 이외의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시에 일반 상식과 관례대로 본 선거위원회가 판단한다.

2. 회장 입후보 등록 공지는 총회 2달 전에 공지 하여야 하며 30일간 공지한 후 마감한다.

3.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전에 본 회에 마련된 양식을 작성하여 공탁금 4,000불 (Certified Check)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pay to the order of : kttausa)

4. 입후보자의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 회장 후보 등록인과 투표 일시는 총회 개최 30일 전 총회 소집 공고와 함께 한다. (제 17대는 4월 19일 이전 공고)

6. 등록한 후보자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 하였거나 투표권자(지회장)에 대한 금품 제공등 비위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본 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또한 회장 당선 이후라도 이러한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재미대한탁구협회 상벌위원회”에서 탄핵을 소추할수 있다.

7. 총회 개최는 투표권자(지회장)의 과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투표권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재미대한탁구협회에 마련된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8. .단독 입후보일 경우 투표권자의 과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1차에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회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며, 회장 선출은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 추대위원회”에 위임한다..

9. 복수 입후보자 일 경우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득표가 동수일 경우엔 총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10.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 추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회장을 추대한다.

추대위원은 관례대로 전직 회장과 (현)이사장으로 구성되며 (현)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11.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선출된 후 선거관리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재미대한탁구협회에 이관한 후 임무를 마친다.

12. 제 17대 회장 임기는 2025년 7월1일부터 2년이다.

2025년 3월 1일

재미대한탁구협회 선거관리 위원

양성우, 양창원, 송민용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 권 정 , 이사장 양재국